# <u>바로 ERP 서비스 이용 약관</u>

(이용자용)

#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바로 ERP 서비스(이하 "API 서비스"라 한다)의 통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한 솔루션을 통해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데 따르는 "은행"과 API 서비스 이용 기업고객(이하 "이용자"이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바로 ERP 서비스"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고객(이하기업고객이라 한다)이 회계, 물류,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중인 솔루션에 은행이 제공하는 통신 API를 결합하여 은행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API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통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란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에 추가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통신모듈을 말합니다.
  - 3. "서비스제공자"란 은행에서 제공한 API를 사용한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 API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솔루션 운영 사업자를 말합니다.
  - 4. "이용자"란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사용한 솔루션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과 API 서비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기업고객을 말합니다.
  - 5. "솔루션"이란 이용자의 회계, 물류, 재고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컨설팅 포함) 등을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포함)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이용자의 금융거래사실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제3조(API 서비스의 종류)

- 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API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계좌 기본서비스 : 예금주 성명 조회, 계좌 잔액 조회,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
  - 2. 일반이체 관련 서비스: 10건이하 이체 및 예약 이체 정보 입력 및 전송(이체는 이용자가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최종 결정), 이체 처리결과 조회 등

- 3. 대량이체 관련 서비스 : 대량이체 및 급여이체 정보 입력 및 전송(이체는 이용자가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최종 결정), 대량/급여이체 처리결과 조회 등
- 4. 공과금 납부를 위한 정보 입력 서비스 : 공과금(지로, 국고, 관세) 납부 정보 입력 및 전송(납부는 이용자가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최종 결정), 공과금 결과 조회 등
- 5. 가상계좌 서비스 : 가상계좌 입금거래내역 등
- ② 은행은 지속적인 API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API의 종류를 추가, 변경,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서비스처리 원칙 및 의무)

- ① 이용자와 은행은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을 통해 요청하여 은행에서 처리한 API 서비스에 대하여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수신거래기본약관, 대상 거래 관련 약관,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규약, 기타 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② 은행은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API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며,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API를 사용한 솔루션을 통해 요청하여 은행이 처리한 거래지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와 은행은 안전한 API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해킹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각 측의 시스템 보안대책을 강구합니다.

#### 제5조(접속환경 구축)

이용자는 API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은행과 접속에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 제6조(서비스 이용)

- ① 이용자는 API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은행에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API 서비스 이용약정 및 서비스제공자 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② 유효한 접근매체를 API를 통하여 제출한 이용자에 한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접근매체의 발급에 대한 신청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접근매체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매체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AP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접근매체의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관리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동의일로부터 1년간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을 일괄통보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API를 통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의 유효기간은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동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정보제공이 중단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을 일괄통보 받는 것에 대해 재동의를 하여야만 API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계속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제⑥항에 따라 이용자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을 통해 본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으로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은행에 요청한 본인의 금융거래사실, 잔액, 거래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대출, 보증관련 정보 포함)을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중단에 대한 별도 서면 통지 또는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동의 유효기간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일괄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⑧ 본 API 서비스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솔루션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은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조회(잔액조회 포함) 및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API 서비스 약정 및 이용에 따르는 이용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② 서비스제공자의 솔루션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서비스제공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릅니다.
- ③ 수수료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이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또는 공고하고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③항의 수수료 변경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 ① API 서비스별 이용가능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업인터넷뱅킹의 서비스별 이용시간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타 금융기관과 관련된 API 서비스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9조 (서비스 약정기간)

본 서비스의 약정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서비스 약정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서비스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중지 및 해지)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가 사전 고지한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하고, 즉시 API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제공자와 은행의 API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해지로 솔루션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자가 API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금융당국으로부터 API 서비스 중단 및 해지 권고가 있는 경우
- 4. API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제①항 이외에 API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이용자가 사전 고지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 후 API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기밀유지)

- ① 이용자와 은행은 API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서비스를 위해 은행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 API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은행에 귀속되며, 서비스제공자가 API를 사용하여 제작한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서비스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3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 ② 제①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은행은 제②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가 제③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이용자의 고객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본 API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 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고객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가 해킹,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로 인해 외부에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비용 및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은행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7. 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내부적 환경에 기인한 접속장에 및 오류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래가 안 된 경우
  - 8.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한 방식 이외의 전산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처리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 9. 이용자가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API를 통하여 제공된 이용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은행이 확인하고 거래지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 제15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본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①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